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계약·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안양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안양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체육회 「안양시체육호니 회계 및 물품 관리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12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제28조(지출원인 행위), 제31조(지출의 절차), 제32조(지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1)</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2)</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3)</sup>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및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3)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제14조제1항<sup>4)</sup>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sup>5)</sup>에 따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8조<sup>6)</sup>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갖춰야 할 제반 서류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제3항<sup>7)</sup>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물품 구입 승낙사항을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안양시체육회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5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 제반 서류를 갖춰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하지만 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계약 및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가. 계약서 미작성 및 분할구매

국·도비 보조금으로 용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2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을 실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실시해야 하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을 대상별이나 시기별로 분할해서는 아니된다.

[표1] 계약서 미작성 및 분할구매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비고
1	2020 ♣♣♣♣	●●●●	트레이닝복 등	*,***,***	
2	2020 ♣♣♣♣	○○○○	피복 등	** ,***,***	
3	2020 ♣♣♣♣	●●●●	트레이닝복	*,***,***	
4	2020 ♣♣♣♣	ⓂⓂⓂⓂ	휠(***)	** ,***,***	
5	2020 ♣♣♣♣	ⓄⓄⓄⓄ	부츠(***)	** ,***,***	
6	2020 ♠♠♠♠	●●●●	트레이닝복 등	*,***,***	
7	2020 ♠♠♠♠	●○●○	소프트웨이트볼 등	*,***,***	
8	2020 ♠♠♠♠	●○●○	**** 등	** ,***,***	
9	2020 ♠♠♠♠	●○●○	트레이닝복 등	*,***,***	
10	2020 ♣♣♣♣	●○●○	**** 등	** ,***,***	
11	2021 ♣♣♣♣	○○○○	**** 등	*,***,***	
12	2021 ♣♣♣♣	●○●○	트레이닝복 등	*,***,***	

13	2022 ♠♠♠♠	●●●●	운동용품	*,***,***	
14	2022 ♠♠♠♠	●●●●	**용품	*,***,***	
15	2022 ♠♠♠♠	●●●●	**용품	*,***,***	
16	2022 ♠♠♠♠	●●●●	**용품	*,***,***	
17	2022 ♠♠♠♠	○●○●○●	훈련용품 등	** ,***,***	
18	2022 ♠♠♠♠	○●○●○●	**용품 등	** ,***,***	
19	2022 ♠♠♠♠	○●○●○●	피복 등	*,***,***	

### 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통해 제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증빙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비고
1	2020 ♠♠♠♠	○○○○	피복 등	** ,***,***	
2	2020 ♠♠♠♠	●●●●	트레이닝복	*,***,***	
3	2020 ♠♠♠♠	▲▲▲▲	휠(***)	** ,***,***	
4	2020 ♠♠♠♠	◎◎◎◎	부츠(***)	** ,***,***	
5	2020 ♠♠♠♠	▲▲▲▲	대관료(9월)	*,***,***	
6	2020 ♠♠♠♠	▲▲▲▲	대관료(10월)	*,***,***	
7	2020 ♠♠♠♠	▲▲▲▲	대관료(11월)	*,***,***	
8	2020 ♠♠♠♠	▼▼▼▼	대관료(9월)	*,***,***	
9	2020 ♠♠♠♠	▼▼▼▼	대관료(10월)	*,***,***	
10	2020 ♠♠♠♠	▼▼▼▼	대관료(11월)	*,***,***	
11	2022 ♠♠♠♠	○●○●○●	훈련용품	** ,***,***	

## 다. 기타 증빙서류 누락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누락이 다수 사업에서 나타났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의 견적이 아닌 학교명으로 받은 견적을 증빙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타업체를 통해 제품의단가를 비교하지 않고 구매하는 등 증빙서류 누락이 발생하였다.

[표3] 기타증빙서류 누락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누락서류
1	2020 ♀♀♀♀	●●●●	**용품	** , *** , ** *	학교명 견적, 타견적
2	2020 ♠♠♠♠	●●●●	트레이닝복 등	* , *** , ***	학교명 견적, 타견적 ×
3	2020 ◆◆◆◆	■ ■ ■ ■	**렌탈	*** , ***	타견적 ×
4	2020 ☂☂☂☂	▒▒▒▒▒▒	**용품	*** , ***	타견적 ×
5	2020 ☂☂☂☂	▒▒▒▒▒▒	테이블 등	*** , ***	타견적 ×
6	2020 ☂☂☂☂	▒▒▒▒▒▒	사무용품	* , *** , ***	물품증빙 ×
7	2020 ****	■ ■ ■ ■	**렌탈	*** , ***	타견적 ×
8	2022 ♡♡♡♡	☎☎☎☎	**용품	** , *** , ** *	타견적 ×, 물품사진 ×
9	2022 ♡♡♡♡	☎☎☎☎	비복비	* , *** , ***	타견적 ×, 물품사진 ×
10	2022 ♣♣♣♣	♠♠♠♠	****	*** , ***	타견적 ×, 물품사진 ×

### [조 치 사 항] 안양시체육회장은

국도비를 비롯한 사업비 전반적인 계약 및 회계 관리를 실시하고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 하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관련자(직원)의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국도비 예결산 회계표기 부적정

[소 속 기 관] 안양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안양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sup>8)</sup>, 제36조(예산의 편성)<sup>9)</sup> 및 「안양시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하고 한해 지출한 예산을 총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정관」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8)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9)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결산)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사업결과 및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체육회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회계연도 시작과 종료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예산(안)편성은 시비 또는 시비와 매칭이 되는 국·도비만 의결하였고 매년 3회 가량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도 순수 국·도비는 예산(안) 심의 및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산에는 국·도·시비를 비롯한 순수 국·도비에 대한 결산심의 를 의결하였다.

#### [조 치 사 항] 안양시체육회장은

2023년도 현재까지 지원받은 국·도비 예산에 대한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국·도비 예결산 심의와 회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담당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안양시청 담당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이해충돌방지제도 미운영

[소 속 기 관] 안양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안양시체육회는(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 단체이다.

또한 경기도 및 안양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단체이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sup>10)</sup>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을 공직유관단체로

10)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지정할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제1항제3호 또는 제4호<sup>11)</sup>에 의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그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지침)을 수립(제정)해야하나 그리하지 않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양시체육회 자체감사(20\*\*.\*\*.\*)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 [조 치 사 항] 안양시체육회장은

기관의 공공성과 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지위와 역할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지침)을 수립(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공직유관단체로써 지위와 역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11)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
-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23.>
-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3.> [본조신설 2009. 2. 3.]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생활체육지도자 정원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안양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안양시체육회는(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안양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50%(경기도 25%, 안양시 25%)를 투입하여 총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안양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지방체육회)<sup>12)</sup> 및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배정인원과 예산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총 335명을 배치하고 안양시에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 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원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

1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호~6호 “생략”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 54만명의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 체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을 위해 꾸준히 채용공고를 내고 있으나 입사 지원자 수 저조 등 다양한 이유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조 치 사 항] 안양시체육회장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인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하반기(2023년 12월) 이내로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이를 본회 공정감사실과 지역지원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